



##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M 2270 : 1997

Asphalt primer used in roofing, dampproofing and waterproofing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콘크리트와 석조 건축물 등의 표면에 도포하여 지표면의 위아래에서 건축물의 방습과 방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스팔트와 함께 사용하는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이하 프라이머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의 맷유법

KS A 5101 표준 체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 방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6 역청 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7 컷백 아스팔트 제품의 중류 시험 방법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3.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세이볼트 품질(furof) 점도 프라이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 온도에서 규정량의 시료가 시험기 도체판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이 때 단위는 초로 표시한다.
- b) 침입도 아스팔트의 경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된 조건에서 규정된 침이 시료 중에 침입된 길이를 나타내며, 단위는 0.1mm를 1로 한다.
- c) 중류 찌끼 프라이머는 360°C까지 컷백 중류한 후 풀라스코 안에 남아 있는 중류 찌끼를 말한다.
- d)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프라이머의 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료를 트리클로로에탄에 녹여 필터로 걸려서 불용분을 제거한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 e) 채 찌끼 규정된 채( $250\mu\text{m}$ )로 제품을 통과시켰을 때 불용분 또는 이물질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4. 품질 프라이머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고, 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시험 항목		규격
점 도(세이볼트 퓨콜) 25°C		25~125
중류 시험(360°C까지의 시료에 대한 부피, %)	225°C 까지	35 이상
	360°C 까지	65 이하
중류 찌끼 시험(360°C 까지의 중류 찌끼)	침입도(25°C, 100g, 5초)	20~50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99.0 이상
체(250μm) 불통과분(%)		0.02 이하

## 5. 시험 방법

5.1 시료 채취 KS M 2001에 따른다.

5.2 점 도 KS M 2013에 따른다.

5.3 중류 시험 KS M 2257에 따른다.

5.4 침입도 시험 KS M 2252에 따른다.

5.5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KS M 2256에 따른다.

5.6 체 불통과분 이 시험은 프라이머 중에 아스팔트 입자가 끓은지의 여부, 혹은 덩어리 또는 이물질 혼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다.

### 5.6.1 시험 기구

a) 체 KS A 5101에 규정된 깊이 20mm, 지름 75mm, 표준체 250μm인 것을 사용한다.

b) 접 시 금속제 또는 유리제로, 그 지름은 약 100mm인 것.

c) 창은 공기 중탕 체 및 접시를 넣을 수 있는 것으로서 105~110°C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5.6.2 시료 준비 프라이머는 거품을 함유하지 않도록 약 30분간 실온에서 방치한다.

5.6.3 조작 및 보고 체 및 접시의 무게를 0.5g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는 KS M 2611에 규정하는 공업용 휘발유 5호로 잘 적신다. 다음에 시료 200±5g과 공업용 휘발유 5호 200±5g을 비커에 허하여 체에 붓는다.

프라이머가 부착된 비커 및 체 위에 있는 찌끼의 프라이머 색이 없어질 때까지 공업용 휘발유 5호로 충분히 씻는다(비커를 씻는 용제도 체에 통과시킨다.). 이어서 체를 접시 위에 올려 놓고 105~110°C의 창온 공기 중탕 안에서 1시간 건조시키고 30분 이상 냉각한 후 전체 무게를 측정한다. 체, 접시 및 찌끼의 전체 무게로부터 체 및 접시의 무게를 뺀 것을 체 불통과분(g)으로 하고, 시료(g)에 대한 백분율을 산출하여 KS A 0021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끌맺은하여 보고한다.

6.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부피,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상호 및 취급상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